

[서식 예]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

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

신청인(채권자)	(이 름)	(주민등록번호	_)
	(주 소)			
	(연락처)			
피신청인(채무자)	(이 름)	(주민등록번호	_	
	(주 소)			
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	(이 름)	(주민등록번호	_)
	(주 소)			

위 당사자간 ○○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,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- 1.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
- 2.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
- 3.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
- 4.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

ㅇㅇ법위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63조의 2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		
비 용	·인지액: 500원(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) ·송달료: 최고서 송달료 및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				
	예납				
불복절차	·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이 아닌 한 반드시 최고를 하여야 하고, 최고의 필요가 없다고 하여 최고하지 않을				
및 기 간	수 없다. 이 최고는 진술최고서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는				
	방법으로 한다(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제2항,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).				
	·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				
	이내에 서면으로 다음	각호의 사항을	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		
기 타	사집행법 제237조제1항)				
	·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				
	적어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한다.				

※ (1) 관 할 (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 3)

- ①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●●●분류표시: 가사소송 >> 양육비직접지급명령